

[별표 4]

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(제4조제3항 관련)

가스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압력조정기(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)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
2. 정압기용 압력조정기와 정압기용 필터(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)
3. 매몰형정압기
4. 호스
5. 배관용 밸브(볼밸브와 글로우브밸브만을 말한다)와 콕
6. 배관이음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
 - 가. 전기절연이음관
 - 나. 전기용착폴리에틸렌이음관
 - 다. 이형질이음관(금속관과 폴리에틸렌관을 연결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)
 - 라. 컵카플러
 - 마. 셰이프티커플링
7. 강제혼합식가스버너(제8호에 따른 온수보일러 및 냉난방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)
8. 연소기(연소장치 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시간당 가스소비량이 20만kcal 이하인 것만을 말하되,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
9.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(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10. 로딩암>Loading Arm)
11. 연료전지(시간당 가스소비량이 20만kcal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